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동욱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422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1월 05일

발 의 자: 김동욱,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 김성준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일, 김원태, 김재진, 김지향, 김춘곤, 김형재, 김혜지, 문성호, 민병주, 박성연, 박영한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신복자, 옥재은, 왕정순, 유정인, 윤기섭, 윤영희, 이봉준, 이상욱, 이영실, 이용균, 이종태, 최민규, 최윤희, 최호정, 한신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
의원(42명)

1. 제안이유

-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므로,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자 중 다른 추천자가 모두 추천을 완료한 경우 그 추천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규정함(안 제8조제6항 신설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1항 각 호의 추천자는 다른 추천자가 모두 추천을 완료한 경우 그 추천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의 특례)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8조제1항 각 호의 추천자 중 다른 추천자가 모두 추천을 완료한 경우 나머지 추천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~ ⑤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>⑥ · ⑦ (생략)</p>	<p>제8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제1항 각 호의 추천자는 다른 추천자가 모두 추천을 완료한 경우 그 추천을 완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⑦ · ⑧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)</u></p>